

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

1. 계약 기간

-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 내로 한다. 다만,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.
- ②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.
-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 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 간 연장 된다.

2. 계약 목적

- 장기 요양 보험 수급자와 급여 제공 센터 간의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.

3.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- 신원 인수인은 센터로부터 건강 보험 공단이 발행한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기준하여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.
- 신원 인수인은 센터로부터 수급자의 급여 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.
-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신원 인수인은 정가 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
- 신원 인수인은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.

4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- 이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.

①월 이용료
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 제공 일수로 산정한다.

구 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월 한도액 본인부담(15%)	2,069,900	1,869,600	1,455,800	1,341,800	1,151,600	643,700
본인부담금 내역	기초수급자		0% 부담			
	의료수급자, 감경대상자		6% 부담			
			9% 부담			
	일반수급자		15% 부담			

* 장기 급여 제공 시간별 비용은 2024년 기준

② 그 밖의 이용 부담액

- 재가 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% 금액을 수급자 부담
- 수급자 식비 본인 부담 1회 3000원

5. 계약의 해제 :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, 시설 전원 등 계약 해제 사유 발생 시 수급자(보호자)는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요양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고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다.